

지되기에 이르렀다.

# 우리나라의 産業環境과 環境法制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70년대를 전후하여 정부에서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게 되자 그 규제가 불가피하게 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산업공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만 그 본질적 내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環境法制가 이러한 산업공해일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도록 그 내용이 정비되어 있는가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보자 한다.



오석락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법제의 정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1963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 때 제정된 公害防止法이 그 효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公害

防止法은 법 자체에 미비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1971년에 이르러 대폭으로 개정 강화되었으나, 1977년 말 국회에서 環境保全法과 海洋汚染防止法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폐

## 환경법제의 정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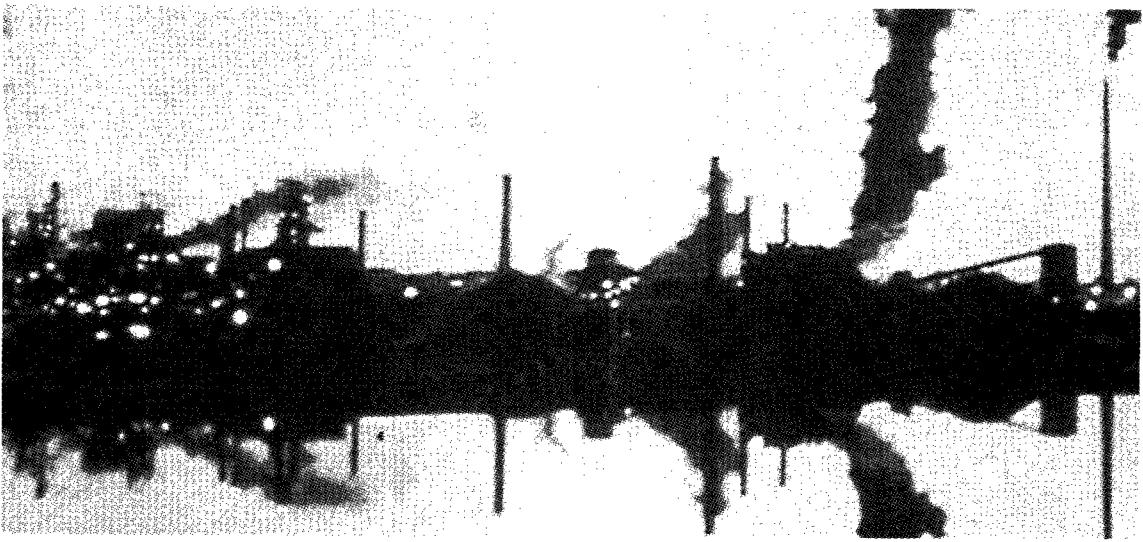
環境保全法은 이름해인 1978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危害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환경권, 건강권은 비로소 그 실정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른바 總量規制, 環境影響評價制度 등과 같은 산업공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식으로 마련되게 되었다. 그 후 環境保全法은 1년반만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번에는 환경청의 신설발족에 때 맞추어 그 규제 내용이 보다 더 명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에너지 관련타분야법에도 1978년 도에 도입되었다.

## 환경법제의 정비내용

최근 環境法의 分法化作業이 완료되어 環境保全法은 폐지되고 環境政策基本法 등 6大法이 새로이 제정되었는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環境政策基本法

環境保全法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점차 다양화, 복잡화해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個別 單行法으로 分리시켜 國家環境保全施策의 기본이론과 방향을 제시하고 環境關係法律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이 국가 전체로서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2. 大氣環境保全法

環境保全法 중에서 대기보전관계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를 예방하는 등 기존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3. 水質環境保全法

環境保全法 중에서 수질보전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오염이 심화된 湖沼의 특별관리 등 기존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4. 騷音, 振動規則法

環境保全法 중에서 소음, 진동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소음, 진동배출시설 외에 건설소음, 진동,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소음 등 소음, 진동발생원 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靜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環境保全法의 일부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6. 環境污染被害分爭調整法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그로 인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환경법제의 정비방향

현행 환경법제에 내포되어 있는 결합에서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한 개선책을 잠시 살펴본다. 지금까지 제기된 환경분쟁은 배상청구와 日照妨害 정도가 고작이고 그 숫자도 미미한 실정인바, 이같이 환경책임에 대한 追及이 부진한 이유는 제정상의 결합과 법원의 무성의, 전문지식결여 등이 그 主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당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집단소송의 전형은 미국의 大氣淨化法(The Clean Air Act)상의 市民訴訟(Citizen Suit)인데(320條), 거기서는 자연인(Individual)은 물론 법인(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단체(Association), 주(State), 자연단체(Municipality)와 주의 하부정치단체(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까지도 富事者適格을 明文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시민소송의 절차규정은 聯邦民事訴訟規則(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그 특징으로서는 대표자에 의한 소송의 유지와 既判力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의 구성원은 소송에서의 제외신청을 통하여 기판력의 차단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집단소송법(12조)은 대표자의 聯權交替制度까지 둘으로써 진일보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獨逸新環境責任法(UHG)은 順補準備制度(Deckungsvorsorge)를 마련하여 환경책임의 효과적인 이행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하다.

우리 환경법제가 진정으로 산업공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전하는 방폐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같은 선진제도들의 시급한 도입시행

이 요청되지 마지 않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 우리나라 산업환경정책의 발전방향

끝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이 추구되어 온 결과 산업의 환경파괴적 요소는 「必要惡」으로 인식되었으나, 80년대 이후 환경오염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자 급기야 5차 5개년계획(1982~1986)에서 환경보전을 공식적인 發展目標의 하나로 표방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6차 5개년계획(1987~1991)에서는 환경부문에 대한 계획을 독립된 章으로 마련하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환경기준의 강화와 원인자부담 원칙의 확립 및 사전예방기술의 개

발이 국가환경정책의 당면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UNCED에 대한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어 있는바와 같이 환경정책이 환경보전과 경제 성장의 조화를 위하여 「持續可能發展」(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 입각하여 궤도수정을 한 것이나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Clean Technology 만이 미래의 산업환경에 적용가능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에너지부문의 몇가지 지수만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83년도까지 80만대에 못미치던 자동차대수가 90년대에 들어와 340만대를 돌파하였고, 에너지소비증가율도 전년도대비 14.1%로 뛰었으며, 화석연료의존도 역시 8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CO<sub>2</sub>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는 대체에너지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몬트리올의정서 등 각종 환경협약과 UNCED의 Agenda 21의 채택은 문제를 더욱 급박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최근의 시각의 변화도 이같은 국내외 환경요소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全經聯 산하 산업환경위원회가 금년초 환경을 「經濟財」로 보는 인식의 일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